보도시점 (전매체) 10. 16.(수) 08:00

"협상 테이블부터 스타트업 기술 지킨다!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반영"

「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·구제 강화 방안」 발표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중기부)는 10월 16일(수) 열린 '경제관계 장관회의'에서 「**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·구제 강화 방안**」을 **발표**했다.

최근 **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**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**시장의 주축으로 성장**함에 따라 **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**하는 추세이다. 그러나 **약한 협상력, 법제도의 미비 등**으로 인해 **인력·자금이 부족**한 스타트업이 **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**하는데 **어려움이 가중**되고 있는 상황이다.

* '24년 CES 혁신상의 85.3%를 벤처·스타트업이 차지('21년 23개사 → '24년 128개사)

** '23년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·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比 167% 증가

이에, 중기부는 '제26차 민생토론회(6.20)', '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(7.11)' 등 **총 4회에 걸쳐**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**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**하여 **4대 중점 추진 전략**을 마련했다.

4대 중점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

1.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한다.

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**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**받기 위해서는 **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**했다. 그러나 **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**하여 향후, **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** 지원받을 수 있도록 **제도적 방안**을 검토할 계획이다.

* 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요건 : '비밀관리+비공지성+경제성' 충족 필요

2. 협상·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·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.

현재는 수·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①**비밀유지계약(NDA)을 협상,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**하고, 구두 형태로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②**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**하고 ③**협상이 종료된 경우** 기술을 **반환하거나 폐기**하도록 **법적 의무를 강화**할 방침이다.

2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

1. 기술탈취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.

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**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**하고, 명령을 **이행하지 않을 경우**에는 **형벌을 부과**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.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. 또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**중대한 법위반행위**에 대해서는 **과징금을 부과**하는 **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**도 검토한다.

2. 고질적인 과소배상 문제를 해결한다.

현재는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되어 **실제 발생한 손해만이 배상액으로 인정**되었지만, 앞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**신기술의 경우**라도 **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**이 **손해 비용으로 인정**될 수 있도록 **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**할 계획이다.

* (현재) 양도·판매에 따른 실손해 시장교환가치 → (개선) 좌동 + 기술개발비용 원가가치

3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

1. 통큰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향상시킨다.

지금까지 개별·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이 **자율적으로 선택**하여 **통합·연속적으로 이용**할 수 있도록 **'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' 지원을 확대***하고, 특히 혁신 **스타트업**에 대해서는 바우처 **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****한다.

* '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예산(정부안)' : 18억 ('24) → 28억 ('25)
** 스타트업 특례 : 일반 중소기업 대비 지원금액(+1천만원), 보조율(+10%)

2. 집중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.

대기업 등과의 비밀유지계약(NDA)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**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**하고, 기술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**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**시키기 위하여 **융자·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**한다.

4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

1.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.

스타트업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**'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' 도입**과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**직권조사**를 통하여 **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**한다.

2.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.

기술분쟁의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**사실조사를 추진**하고, 조정에 앞서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는 **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**하여 **신속한 합의를 유도**할 계획이다.

* 알선 : 전문가가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先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

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"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**스타트업의 혁신 기술**을 **사각지대 없이 보호**하고, **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하여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**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**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**으로 기대한다"라며 "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**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**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	책임자	과 장	남정렬 (044-204-7780)
		담당자	사무관	추형준 (044-204-778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1 「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·구제 강화 방안」 주요내용

Ⅰ 추진 배경

□ **(환경변화)** 스타트업이 기술혁신을 선도*함에 따라 대기업 등과 협업이 확대되며 혁신 BM 등 내부 기술탈취도 함께 증가

* '24년 CES 혁신상 수상의 85.3%가 벤처·창업기업('21년 23개사 → '24년 128개사)
** '23년 기술탈취를 이유로 조사·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比 167% 증가

□ **(침해형태)** 최근 기술탈취는 기존의 납품 등 거래 관계를 벗어나, 협상 등 계약이전 단계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

* (종래) "기술요구 → 거래단절 → 탈취기술 제공 → 거래처 변경 + 단가인하 등"
(현재) "미팅·협상 → 협상종료 → 유사 서비스·제품 출시 + 특허 무단선점 등"

□ **(현재상황)** 스타트업은 '철저한 을의 입장'에서 협상을 추진 → 現 보호체계*는 충분한 안전 장치와 처벌 및 보상 제공이 불가능

* ▲거래 관계에 기술보호 집중, ▲NDA 등 법적의무 부재 및 ▲약한 처벌 등

Ⅱ 중점 추진방향

◇ **(목표)**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고, 정책 집중지원을 통한 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

❶ **[범위는 넓히고]** 스타트업의 혁신 BM 등 내부 기술과 협상·교섭 단계 등 일정한 거래관계 형성 이전까지 폭넓게 보호

❷ **[처벌은 강하게]** 시정명령(+형벌) 도입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, 손해산정 제도 개선*을 통한 합리적 피해보상 체계 구축

* (손해산정) 현행 양도·판매에 따른 실손해 → 개선 좌동 + (개발비용 등 미실현 손해)

❸ **[지원은 더하는]** 스타트업 전용 법률자문,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* 및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별 향상을 위한 바우처 등 지원

* 후속 특허출원 모니터링 후 모방의심 특허 선별, 전문가 진단 정보 등 제공

Ⅲ 세부 추진 계획

1 기술보호 범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

❶ **(제도 정비)** 협상 중 자발적 기술 제공과 **스타트업 자금 상황** 등을 고려, **現 비밀관리 요건***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**제도적 지원**방안 **검토**

* (현재) 영업비밀 수준으로 요구 : 비밀관리성 + 비공지성 + 경제성 모두 충족 必

❷ **(법적 의무)** 종래 **수·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적용**되던 기술 제공시 **NDA 체결** 등 **법적 의무***를 **모든 양자 관계**로 확대

* (수위탁·하도급 거래에 공통) NDA 체결, 부당한 기술요구 금지, 보복행위 금지
(수위탁에만) 기술임치 요구시 불이익 제공 금지 / (하도급에만) 서면 발급

○ **(추가)** 협상 과정의 **기술요구 절차를 강화**하기 위해 **▲기술 요구시 서면 발급**과 **▲협상 종료 후 반환·폐기 의무** 도입

○ **(적용)** 수·위탁거래 관계의 **위탁기업**과 함께, **창업·벤처기업**과 협상하는 **대·중견기업, 공공기관 등**에게 **의무 부과**

2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

❶ **(제재 조치)** '시정권고 → **시정명령(+미이행시 형벌)**'으로 **상향**하고, **금전적 제재 검토**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**행정조치 강화**

* (처분적 조치) 現 시정권고 + '시정명령 → 불이행 → 언론공표 + 형벌 부과'

❷ **(손해 산정)** **양도·판매** 등에 따른 **실손해**와 함께 **기술개발 투입 비용**까지 **손해액으로 인정**될 수 있도록 **산정 제도 개선**

* (현재) 실손해에 따른 시장교환가치 → (개선) 실손해 + 기술개발 원가비용

❸ **(징벌적 손해배상)** **투자 협상·교섭** 등 **계약이전 단계**에서 발생한 **기술탈취 행위**에 대해서도 **최대 5배**의 **배상책임을 부과**

○ NDA 계약에 따른 **"비밀유지의무 위반여부"를 가중 요소**에 추가

❹ **(통합 구제)** 부처별로 **산재하는 피해구제*** 수단을 **신속하게 지원** 받을 수 있도록 **'신고서 작성 → 이첩'** 등 **연계 창구 마련**

* 경찰청(형법), 특허청(부정경쟁방지법, 특허법 등), 문체부(저작권법) 등

3 스타트업 보호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

❶ **(기술보호 바우처)** 스타트업에 대한 **지원한도(+1천만원)**와 **보조율(+10%)**을 **확대**하고, **보호 수준 상승률**에 따라 **추가* 지원**

* 기본 한도/보조율 : (초보45점↓) ~3천/80%, (유망45~75점) ~5천/60%, (선도75+) ~7천/50%
** 전년 대비 보호수준 점수 상향에 따른 추가 지원 : 15점↑ 2천만원, 30점↑ 4천만원

❷ **(스타트업전용 법률자문)** NDA 계약 과정의 **독소조항 제거** 등 보호전략 수립의 ▲신설**예방자문(3일)** → ▲**심화컨설팅(초동+분쟁대응)** 집중 지원

* 신설 : PRE-인큐베이팅 단계 스타트업 내부 기술보호 관리체계 집중 지원(+3일)

❸ **(스타트업 실태조사)** 민간·정부로부터 **기술력을 인정**받은 **창업기업(예 : VC 투자 + 창업지원 수혜기업)**도 **조사 대상**에 **추가**

* (현재) 연구소 보유 기업 등 → (추가) 일정한 투자·지원을 받은 혁신 창업기업

4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

❶ **(핵심기술모방 조기경보)** **스타트업의 핵심 기술**에 대한 ▲분석 → 정보 제공 後 전문가의 ▲**침해판단 및 대응**까지 연계 지원

* 스타트업이 보유한 임치기술, 특허 등을 분석 후, 유사 특허출원 여부 수시 조사

❷ **(초동대응)** 별도의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▲**직권조사***와 법원에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사인(私人)의 ▲**금지청구권**** **도입**

* 직권조사 절차 : 익명제보 접수 → 사건분류 → 예비검토 → 직권조사 추진
** 침해의 금지, 예방과 함께 물건폐기, 설비제거 등을 가처분 형태로 법원에 청구

❸ **(분쟁조정)** 법률 전문가 등을 ▲**전문위원으로 지정**하여 ▲**사실조사** 및 ▲**알선을 지원**하고, 1인 조정부를 통한 ▲**직권조정 절차 신설**

* 전문가가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先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

참고2 스타트업 기술보호·구제 강화를 통해 달라지는 점

기술보호 저하요인

1 좁은 보호범위, 법적 안정망 부족

❶ 보유 기술이 CCTV·접근제한 등 비밀관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보호대상에서 제외
* (현재) "비밀관리성 + 비공지성 + 경제적 유용성"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 수준으로 요구

❷ "철저한 을의 입장"에서 협상 과정에서 NDA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 요구가 곤란
* 수·위탁 등 일정한 거래 관계에서만 NDA 의무화

- **(자료요구)**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내부의 핵심 기술·기술정보를 구두로, 무분별하게 요구
- **(자료거부)** 기술교환 사실을 남기기 위해 서면발급과 NDA를 요구하더라도 거부하거나 기피
- **(자료보유)** 협상 종료 이후에도 별도의 반환·폐기 의무가 없어 기술탈취 위험 요소가 잔존

2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 문제

❶ 수위탁·하도급 등 일정한 거래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정명령, 과징금* 부과에서 제외
* 수위탁(30가지 거래유형)의 일부인 하도급거래(7가지)에만 적용

❷ 양도·판매 등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만이 보상 가능하여, 본격 시장진출 전이거나 신기술일 경우 적정한 손해 보상이 불가능
* (현재) 실제 발생한 피해만 인정(수익접근법 적용)

구분	현행	
산정대상	❶ 개발투입비용	❷ 양도판매비용
청구비용	2억원	2억원
산정방식	기술개발원가	시장교환가치
인정여부	× (불인정)	○
인정손해	6천만원(❷) * 법원 평균 인용률 30% 적용 시	

3 분쟁 초기단계의 신속한 대응체계 부족

❶ 보복 조치 등이 두려워 적극적인 신고를 주저
* 현행법은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 시에만 조치 가능

❷ 행정조사,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피해 확산을 막을 별도의 조치 수단이 부재

❸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분쟁보다는 신속한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

기술보호 강화방안

1 촘촘한 방화벽 구축으로 사각지대 최소화

❶ 법적요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, **외부유출을 방지해야 할 기술**이라면 **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**
*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법적 요건 검토

❷ **기술요구는 서면으로만, 협상단계부터 NDA 체결**과 협상종료 시 **기술 반환·폐기도 의무화**

협상단계	기술요구시	❶ 요구목적, 비밀유지,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시하여 **반드시 서면으로 요구**
	기술제공시	❷ 비밀유지의무, 계약위반 시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 **NDA 체결 의무화**
협상종료시		❸ 제공받은 기술을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내 **반환·폐기토록 의무화**

2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

❶ 투자·공동연구 등을 빌미로 **협상단계**에서 **기술을 탈취**할 경우, **시정명령·형벌과 과징금까지 부과**

❷ 시장 활동 등이 부족한 신기술일 경우라도 투입된 **기술개발 노력(시간·비용)에 비례**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손해액 현실화**
* (개선) 기술개발 투입비용도 인정(원가접근법 추가)

구분	개선(안)	
산정대상	❶ 개발투입비용	❷ 시장판매비용
청구비용	2억원	2억원
산정방식	기술개발원가	시장교환가치
인정여부	○ (인정)	○
인정손해	2.6억원(❶+❷) * 법원 평균 인용률 30% 적용 시	

3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피해확산 방지

❶ **누구든지, 익명으로 신고**할 수 있고 별도의 신고 없이도 착수할 수 있는 **직권조사 도입**

❷ 조사, 손해배상소송 등 **사후 조치에 앞서** 피해 **확산 방지**를 청구할 수 있도록 **금지청구권 도입**
* (금지청구권 개요) 침해의 금지·예방과 함께 물건폐기, 설비제거 등을 가처분 형태로 법원에 청구

❸ **조정 전문위원 도입**으로 전문성을 높이고, **법원연계 및 소액사건**일 경우 **직권으로 조정**